



제400회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영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5031호)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5123호)

2022.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규 찬

목 차

[김영배의원안]

I. 제안경위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검토의견	3

[김예지의원안]

I. 제안경위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7
III. 검토의견	8

심사대상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체목록

연 번	제 안 자	제 안 일 (회부일)	주 요 내 용
1	김영배의원	‘22.03.31. (‘21.04.01.)	· 제156조제1호에 제13조제6항을 추가하여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운전자를 처벌하고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만들고자 함(안 제156조제1호).
2	김예지의원	‘22.04.06. (‘22.04.07.)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시각장애인, 듣지 못하는 사람은 청각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제6항제3호, 제49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82조제1항제3호).

[김영배의원안]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영배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2. 3. 31.
3. 회 부 일 : 2022. 4.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3조제6항에 근거하여 자전거도로에서 자동차가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처벌규정이 부재하여 이를 악용하는 운전자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이에 제156조제1호에 제13조제6항을 추가하여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운전자를 처벌하고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만들고자 함(안 제156조제1호).

현행	개정안
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2. ~ 13. (생략)	----- ----- ----- ----- ----- ----- ----- ----- ----- ----- 2. ~ 13.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차마의 통행에 대해 규정하면서 자전거등을 제외한 차마의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¹⁾ 해당 금지 규정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자전거등 운전자의 교통안전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1)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⑥ 차마(자전거등은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자전거 우선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자전거도로로 위법하게 차마를 통행하는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자전거등 운전자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²⁾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임.

먼저, 자전거도로 중 자전거 전용차로의 경우에는 현행법 제15조제3항 및 제156조제1호에 따라 전용차로 통행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임.³⁾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경우에는 위법한 자동차의 통행에 대해 별도의 차종별 통행금지 표지가 있는 때에만 신호·지시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개정안에 따라 처벌 근거가 마련되는 경우 해당 위법 통행행위에 대해 직접 처벌이 가능하게 됨.

2) 경찰청도 현재 자전거등(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을 제외한 차마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경우, 자전거도로의 종류에 따라 다른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으나, 개정안과 같이 자전거도로 통행금지에 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경우 운전자들이 더욱 쉽고 명확하게 관련 규정을 인지할 수 있어 자전거 운전자 등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임(수정수용).

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 6. 9.>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한다)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 종류 및 처벌 현황>

종 류	의 의	처벌 적용 규정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등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신호·지시 위반(제5조) ※ <u>별도의 차종별 통행 금지 표지 설치 필요</u>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 범칙금 6만원(경찰)/과태료 7만원(경찰)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u>전용차로 통행 위반</u> (제15조제3항) ※ 범칙금 4만원(경찰)/과태료 5만원(지자체)
자전거 우선도로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u>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u>	처벌 없음*

※ 자료: 경찰청

다음으로 현행법 제13조제6항은 차마 운전자의 통행 금지 대상으로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길가장자리구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취지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한 자동차의 운전자를 처벌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한 경우는 그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를 위한 조정이 필요할 것임.

다음으로, 현행법은 차마의 통행(제13조)의 위반에 대해 처벌 규정 외에 비디오 등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전거도로 통행 금지를 위반한 경우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김예지의원안]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2. 4. 6.
3. 회 부 일 : 2022. 4.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은 도로를 보행할 때 흰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거나 장애인보조건을 동반하여야 함.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같은 의미로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적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대통령령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에 듣지 못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법률로 규정하여 명확히 할 필요도 있음.

이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시각장애인, 듣지 못하는 사람은 청각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6항제3호, 제49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82조제1항제3호).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행법에 규정하고 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시각장애인, 듣지 못하는 사람은 청각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 (생략)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u>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 의 보호자는 그 사람이 도로를 보행할 때에는 흰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도록 하거나 <u>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u> 에게 길을 안내하는 개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이하 “장애인보조견”이라 한다)를 동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u>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이하 “시각장애인등”이라 한다)</u> 의----- ----- ----- <u>시각장애인등</u> <u>에게</u> -----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u> 으로서 흰색 지팡이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니는 사람	3. <u>시각장애인등</u> 으로서----- ----- ----- -----

현행	개정안
4. (생략)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할 것 가. (생략) 나. <u>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u>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다. (생략) 3. ~ 13. (생략) ② (생략)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2. (생략) 3. <u>듣지 못하는 사람</u>(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 <u>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u>(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4. ~ 7. (생략) ②·③ (생략)	4. (현행과 같음)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현행과 같음) 나. <u>시각장애인등이</u>----- ----- ----- 다. (현행과 같음) 3. ~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 ----- -----. 1. 2. (현행과 같음) 3. <u>청각장애인</u>----- -----<u>시각장애인</u>----- ----- ----- ----- 4.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현행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제49조제1항제2호(모든 운전자의 일시정지 규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듣지 못하는 사람 등의 용어를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인에 대한 용어, 즉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률적 용어의 통일성 및 명확성을 제고·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임.⁴⁾

다만, 개정안 제11조제2항은 흰색지팡이를 소지하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도록 하는 조치의 대상에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을 명시하고 있는데, 청각장애인의 경우 보행 시 안전에 대한 대처가 스스로 가능하며, 일반인과 동일하게 각종 교통안전시설 등을 식별할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

3. 시각장애인(視覺障礙人)

가.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마.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인(聽覺障礙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수 있으므로 해당 안전조치의무 대상에서 청각장애인을 제외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이와 동시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도 동일한 취지로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⁵⁾⁶⁾

문 의 처

02)6788-5344

5)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듣지 못하는 사람

2. 신체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의족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보행을 할 수 없는 사람

6) 경찰청도 개정안에 대해 법률용어의 통일성 제고 등 측면에서 공감하는 입장이며,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중 시각장애인에 준하는 사람으로 청각장애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삭제하겠다는 입장임.